

공공 혜택 이용이 내 이민 상태에 영향을 미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일부 사람들은 연방 정부가 '공적 부조' (public charge) 규정을 변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이민자들이 일부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미국 영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 2024년 현재, 공적 부조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공적 부조 규정이 변경되면 최신 정보는 nyc.gov/publicchar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공적 부조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망명 신청자
- 난민
- 특별 이민 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 분류를 신청했거나 받은 사람
- U 비자 또는 T 비자를 신청했거나 받은 사람
- 영주권자로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 기타 면제 대상자 범주에 속하는 사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귀하나 가족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공공 혜택 프로그램이나 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는 두려움 없이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공적 부조 규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공 혜택과 서비스 자격에 대한 규정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가 모든 뉴욕시 거주자에게 많은 무상, 저비용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응급 및 비응급 의료 서비스, 아동 및 일부 성인을 위한 건강 보험, 식료품 지원, 세입자 보호, 근로자 보호, 법률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 지불 능력, 고용 상태 또는 영어 구사 능력과 관계없이 이러한 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 혜택 프로그램이나 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또는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자세한 정보를 위해 시의 핫라인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의 이민 법률 지원 핫라인(Immigration Legal Support Hotline) 800-354-0365번으로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하시거나, **311**로 전화하여 "public charge"라고 말씀하시면 무료로 안전한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핫라인과 **311** 모두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